知的所有權保護를 위한
國際機構및 條約의 紙上探訪

○…… 知的所有權 保護를 위한 國際機構 및 條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가장 基……○
○……礎的인 質問같지만 선뜻 體系的 對答을 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이……○
○……들 機構 및 條約과 접할 機會가 적었기 때문이다. ……○
○…… 그러나 知的所有權의 國際化時代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이들 機構 및 條約을……○
○……모르고는 知的所有權의 保護를 期待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本誌는 紙上探訪을 마……○
○……련, 이들 機構 및 條約을 紹介하기로 했다. ……<金 亨 昊 記>……○

◉ 第 4 回 ◉

▩ 이달의 目次 ▩

▩파리協約
<다음號에 繼續>

◎ 파리 協約

▲ 正式名稱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of March 20, 1883,

as revised

at Brussels on December 14, 1900, at Washington on June 2, 1911, at The Hague on November 6, 1925, at London on June 2, 1934, at Lisbon on October 31, 1958, and at Stockholm on July 14, 1967,

and as amended on October 2, 1979

▲ 加入國現況*1

현재 파리協約에는 97個國이 加入하고 있다.

加入國들을 알파벳 순으로 열거해 보면 알제리, 아르젠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바하마, 바르바도스, 벨지움, 베닌, 브라질, 불가리아, 버키나훼소, 부룬디, 카메룬, 캐나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챠드, 中共, 콩고, 쿠바, 키프러스, 체코슬로바키아, 北韓, 덴마아크, 도미니카, 이집트, 필란드, 프랑스, 가봉, 東獨, 西獨, 가나, 그리이스, 기니아, 아이티, 홀리세, 헝가리, 아이스란드,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태리, 아이보리코스트, 日本, 조르단, 케냐, 레바논, 리비아, 리히텐스타인, 룩셈부르그,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말타, 모리타니아, 모리시어스, 멕시코, 모나코, 몽고, 모르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제르, 나이제리아, 노르웨이, 필리핀, 폴랜드, 포루투칼, 韓國, 루마니아, 루안다, 샌마리노, 세네갈, 남아프리카, 소련, 스페인, 스리랑카, 수단, 수리남,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탄자니아, 토고,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터어키, 우간다, 英國, 美國, 우루가이, 베트남, 유고슬라비아, 자이레, 잠비아 및 짐바브웨 등이다.

▲ 沿 革

○ 制 定

1883.3.20 21個國 代表가 參加한 파리 國際會議에서 1880年에 成案된 初案에 의거 制定. 11個國代表가 이에 署名 調印.

1884. 6. 6 11個國에 의해 批准
1884. 7. 7 發効

○ 改 正*2

1900.12.14 브뤼셀 改正會議
1911 워싱턴 〃
1925 헤이그 〃
1939 런던 〃

*1 各 締約國의 등급, 가입일자, 비준협약 등 자세한 사항은 "해외특허정보 第5輯" p110 참조.
*2 로마(1886年) 및 마드리드(1890年 및 1891年)에서 第1, 2回 改正會議가 개최되었으나 이 회의의 결정은 단 한 나라의 비준도 받지 못함. 다만 마드리드회의에서는 두종류의 마드리드協定을 결의사항으로서 채택하였다. 主要 改正內容은 本會 發刊「工業所有權叢書 I」(1980.8) 參照.

1958.10　리스본 改正會議
1967.6~7　스톡홀름　〃

▲ 適用範圍

파리協約은 發明, 商標, 서비스標 및 意匠뿐만 아니라 實用新案(몇개국에서는 "小發明"으로 規定되어 있음), 商號(工業的 또는 商業的 活動을 수행하는데 쓰이는 名稱), 出處表示, 原產地 名稱 및 不正競爭防止 등 넓은 의미의 工業所有權에 適用된다.

▲ 主要 規定

파리協約은 內國民待遇, 優先權 및 몇개의 一般原則 등 세가지 주요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1) 內國民待遇 또는 內外國人 平等의 原則

協約은 工業所有權의 保護에 관하여 各 締約國은 他締約國의 國民에게도 自國民에게 附與되는 것과 同一한 保護를 附與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또한 非締約國의 國民일지라도 締約國의 領域內에 住所 또는 現實的이고 效果的인 工業上 혹은 商業上의 營業所를 가진 者는 協約에 의해 保護를 받게 된다.

(2) 優先權

파리協約은 特許(發明者證 및 實用新案 포함), 商標 및 意匠에 있어서 優先權을 規定하고 있다.

締約國 가운데 한 나라에 한 最初의 正規出願을 근거로 하여 一定期間(特許, 發明者證 및 實用新案은 12個月, 意匠 및 商標의 경우에는 6個月)內에 다른 締約國에 出願할 경우, 이러한 後出願은 出最初願을 한 날에 出願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시 말해서 이를 後出願은 優先權期間中에 他人에 의한 同一한 發明, 實用新案, 商標 혹은 意匠에 관한 出願보다 優先權을 가지게 된다.

또한 最初出願을 근거로 한 當該 後出願은 優先權期間中에 發生할 수 있는 어떠한 事件(즉, 發明의 公開, 意匠을 포함하거나 商標가 부착된 物品의 販賣 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이 規定의 큰 實益의 하나는 出願人이 몇개국에서 保護를 받고자할 때 同時에 몇개국에 出願을 할 필요없이 保護를 받고자하는 나라를 결정하거나 안전한 保護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상 준비를 하는데 6個月 혹은 12個月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다.

(3) 一般原則

모든 締約國에 적용되는 몇개의 一般原則을 두고 있다. 그중 중요한 것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特許 分野

—同一發明에 대하여 서로 다른 締約國에서 許與된 特許는 서로 독립적이다. 締約國中 一國에서의 特許의 許與가 他締約國을 속박하지는 않는다. 다시말해서 締約國의 一國에 있어서 어떤 特許가 拒節, 無效 또는 滿了된 것을 理由로 하여 他締約國에서 拒節, 無效 또는 滿了되지는 않는다.

—發明者는 特許에 있어서 發明者로서 明記될 權利를 가진다.

—特許받은 製品이나 特許를 받은 製法으로 얻어진 製品의 販賣가 國內法으로부터 제재 또는 制限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유로 特許의 許與가 拒節되거나 特許가 無效되지는 않는다.

—各 締約國은 不實施等 特許가 가지는 獨占權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强制實施權의 許與를 規定하는 法律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商標分野

—商標의 出願 및 登錄條件은 各 締約國에서 國內法令으로 定한다. 그러나 締約國의 國民이 어느 締約國에 登錄出願을 한 商標에 대하여는 本國에서 登錄出願, 登錄 또는 存續期間이 更新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理由로 하여 登錄이 拒節되거나 無效되지 아니한다. 어느 同盟國에 正規로 登錄된 商標는 他同盟國(本國도 包含함)에 登錄된 商標로 부터 獨立한 것으로 한다.

즉, 締約國의 一國에 있어서 어떤 商標登錄의 消滅 또는 無效가 他締約國에 있어서 登錄의 效力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本國에서 正規로 登錄된 商標는 要請에 의해 他締約國에 있어서도 본래의 형태로 登錄이 認定되거나 保護된다. 그러나 다음의 몇가지 경우에 대해서 그 登錄은 拒節될 수도 있다.

- 當該 商標가 第三者의 기득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 當該 商標가 識別性을 가지지 못할 경우
- 當該 商標가 道德 또는 公衆秩序에 反하는 것, 特히 公衆을 欺滿하기 쉬운 경우

—同盟國은 하나의 商標가 다른 하나의 商標 즉 이 協約의 利益을 받는 者의 商標로서 同一 또는 類似한 商品에 대하여 使用되고 있다고 그의 同盟國에 널리 認識되고 있는 것이라고 그의 權限있는 當局이 認定하는 경우 하나의 商標가 그 著名商標의 復製인 경우 또는 當該 著名商標와 混同을 일으키기 쉬운 模倣 또는 翻譯인 경우에는 그 하나의 商標의 登錄을 拒絶 또는 無效로 하거나 그의 使用을 禁止하여야 한다.

또한 各 締約國은 WIPO 國際事務局을 통하여 相互通知된, 國家의 記章, 公共의 記號 및 印章을 포함한 商標를 許可없이 使用하는 것도 금지하여야 한다.

이 規定은 當該 國際機構의 紋章, 旗章, 其他의 記章, 約稱 및 名稱에도 適用한다.

—서비스標 및 團體標章도 保護를 받는다.

○ 意 匠

意匠은 모든 締約國에 있어서 保護를 받으며 當該 意匠이 구현된 物品이 그 國家에서 製造되지 않는다는 理由로 保護가 取消되지는 않는다.

○ 商 號

商號는 各 締約國에서 出願이나 登錄의 의무없이 保護되는 것으로 한다.

○ 出處表示

各 締約國은 產品의 原產地 또는 生產者, 製造者 혹은 販賣人에 관하여 直接 또는 間接으로 虛僞의 表示가 行하여지고 있는 경우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不正競爭

各 締約國은 不正競爭에 對하여 效果的인 保護를 規定해야 한다.

○ 管 理

—各 締約國은 工業所有權에 관한 特別의 業務를 수행하고 特許, 實用新案, 意匠 및 商標를 公衆에게 알리기 위하여 中央事務所를 운영하여야 한다.

위에 언급한 業務의 일환으로 定期的인 公報를 發行해야 한다.

公報에는 當該 特許發明의 簡單한 說明, 모든 登錄된 商標의 複製등과 함께 特許權者의 姓名을 記載하여야 한다. 〈계속〉

工所權 用語 30個 審議 確定

86年度 第3次 工業所有權 用語審議會서

⊙…… **工業所有權 用語 醇化 審議委員會는 지난 10月 24日 大韓辨理士會 會議室에서**……⊙
⊙……**86年度 第3次 委員會를 개최하고 42個 用語중 30個 用語를 審議確定했다. 審議·**……⊙
⊙……**確定된 用語는 다음과 같다.** ……⊙

순화대상용어	구분	심의확정어	순화대상용어	구분	심의확정어
곽 지(攫持)	×	잡아쥐다, 거머쥐다	정지상(停止狀)	×	멈춘상태, 정지상태
구 조(溝條)	×	홈줄	주 편(鑄片)	×	주물편
뉴 사(紐糸)	×	끈, 줄	지 가(支架)	×	지지하여 가설
독 출(讀出)	→	기록된 정보를 읽어내다	지 립(砥粒)	×	연마용 입자
배진통(排塵桶)	×	먼지배출관(통)	천상공(天上孔)	×	상부구멍
산무장치(散霧裝置)	×	분무장치	초경지입삭재(超硬砥粒削材)	×	연마용 초경입자
소액적상(小液滴狀)	×	작은 물방울 모양	촌동운전(寸動運轉)	×	미동운동
소호제(消糊劑)	×	탈호제(脫糊劑)	최대후(最大厚)	×	최대두께
악 착(握着)	×	잡아붙임	축봉부(軸封部)	×	축밀봉부
연주기(連鑄機)	×	연속주조기	축 퇴(縮退)	×	점점 줄어지다
인부재(刀部材)	×	날부재	취부판(取付板)	×	부착판
인 취(引取)	×	끌어내다	취 비(吹飛)	×	불어날리다
적공판(笛孔板)	×	다공판	취 절(吹切)	→	(유리성형시)불어끊는다
전 조(轉造)	→	나사등의 가공시 눌러 회전시켜 성형하는 것	할 출(割出)	×	분할
정역회동(正逆回動)	×	정역회전	혼소비율(混燒比率)	×	혼합연소비율

註 : × : 심의 확정어만 사용한다. → : 뜻만 확정시킨 것.